##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724

발의연월일: 2022. 8. 1.

발 의 자:이종성·김영식·김형동

박대수 · 박형수 · 서일준

성일종 • 이종배 • 정운천

정진석 · 조명희 · 추경호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그 사유 및 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, 해당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그러나 해당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수가 조정, 규제 완화 또는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나,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.

이에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중단 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

것을 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, 생산 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받도록 하며, 필요한 조치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의료기기 생산·수입중단 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5항및 안 제31조의6 신설 등).

##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조업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(이하 "생산·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"라 한다)의 생산·수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중단일의 18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재료 중단, 해외 제조원의 갑작스런 생산 중단 등 중단일의 180일 전까지 보고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·수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할 수 있다.

제5장에 제3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6(의료기기 제조·수입중단에 대한 조치) 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생산·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의 제조 및 수입 중단을 보고받으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제2호의 경우 위원회 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.

- 1. 생산 · 수입중단 보고된 의료기기 관련 유통현황 조사 및 관리
- 2. 생산·수입중단 보고된 의료기기의 생산·수입중단 시 대처 방안 마련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나 자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산·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가 생산·수입중단된 경우 해당 의료기기 또는 대체 가능한 의료기기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적으로 생산·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의 생산·수입·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.
-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산·수입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의 유통현황 조사 및 관리 업무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 검토 업무 및 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한 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36조제1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3. 제13조제5항(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

위반하여 생산·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의 생산·수입 중단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

제43조제1항제8호 중 "제44조제2항"을 "제31조의6제5항 및 제44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56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제13조제5항(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생산·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의 생산·수입 중단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	개 정 안
제13조(제조업자의	의무)	1	~	제13조(제조업자의 의무) ① ~
④ (생 략)				④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			⑤ 제조업자는 국민보건에 중대
				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로서
				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
				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
				의료기기(이하 "생산·수입중
				단 보고대상 의료기기"라 한다)
				의 생산ㆍ수입을 중단하고자 하
				는 경우 중단일의 180일 전까지
				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				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
				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				다만,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
				원재료 중단, 해외 제조원의 갑
				작스런 생산 중단 등 중단일의
				180일 전까지 보고하지 못하는
				부득이한 사유로 생산ㆍ수입이
				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로부
				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함께
				보고할 수 있다.
<u> &lt;신 설&gt;</u>				제31조의6(의료기기 제조・수입
				중단에 대한 조치) ① 식품의약
				품안전처장은 제13조제5항에

따라 생산·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의 제조 및 수입 중단 을 보고받으면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 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제2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.

- 1. 생산·수입중단 보고된 의료 기기 관련 유통현황 조사 및 관리
- 2. 생산·수입중단 보고된 의료 기기의 생산·수입중단 시 대 처 방안 마련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나 자문을 요청받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 여야 한다.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산· 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가

생산ㆍ수입중단된 경우 해당 의 료기기 또는 대체 가능한 의료 기기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 도록 필요한 행정적 · 기술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 적으로 생산 · 수입중단 보고대 상 의료기기의 생산・수입・유 통 현황을 모니터링하여야 한 다.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 본문 이외 제1호에 따른 생 산 · 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 기의 유통현황 조사 및 관리 업 무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 검토 업무 및 제4항 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한국 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 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정지 등) ① -----

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, 수 리업자・판매업자・임대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・특별 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 장이 허가・인증・승인 또는 신 고 수리의 취소, 영업소의 폐쇄,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・수입 ・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 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 까지,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 에는 허가・인증・승인 또는 신 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.

1. ~ 9의2. (생 략) <신 설>

10. ~ 25. (생략)

② ~ ⑤ (생 략)

제43조(정보원의 사업) ① 정보원 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~ 9의2. (현행과 같음)				
9의3. 제13조제5항(제15조제6항				
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				
다)을 위반하여 생산ㆍ수입중				
단 보고대상 의료기기의 생산				
•수입 중단을 보고하지 아니				
한 경우				
10. ~ 25. (현행과 같음)				
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		
세43조(정보원의 사업) ①				

- 1. ~ 7. (생 략)
- 8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4 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
- 9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- 제5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56조(과태료) ① -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다.
  - 1. · 1의2. (생략)
  - <신 설>

- 2. ~ 3. (생략)
- ② (생략)

- 1. ~ 7. (현행과 같음)
- 8. ----- 제31 조의6제5항 및 제44조제2항--
- 9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 - 1. · 1의2. (현행과 같음)
  - 1의3. 제13조제5항(제15조제6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)을 위반하여 생산ㆍ수입중 단 보고대상 의료기기의 생산 • 수입 중단을 보고하지 아니 한 자
  - 2. ~ 3. (현행과 같음)
  - ② (현행과 같음)